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091
----------	------

제출일자 : 2020. 1. 9.

제 출 자 : 달성군의회



1. 제안이유

- 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일부 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반영.
- 나. 장기재직휴가 일수 현행 30일에서 50일로 확대함에 따라 업무의 효율성 및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여성보건휴가에서 임신검진휴가 분리·신설(안 제23조 제2, 3항)
- 나. 유·사산 휴가의 일수·대상 확대 등(안 제23조 제11항)
- 다. 장기재직휴가 확대(안 제23조 제14항)
- 라. 자녀돌봄휴가 가산일수 자녀기준 완화(안 제23조 제17항)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 7(※ 붙임)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다. 기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 (2) 입법예고(2020. 1. 9.~1. 28.)결과 : 의견 없음
 -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5)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 (6) 부서합의 : 해당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여성공무원은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하여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제2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무급)를 받을 수 있다.

제23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⑪ 소속공무원 또는 소속공무원의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2.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5. 남성공무원의 경우 3일

제23조제14항제1호 중 “10일 이내” 를 “20일 이내” 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20일 이내” 를 “30일 이내” 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30일 이내” 를 “50일 이내” 로 한다.

제23조제17항 중 “자녀가 셋 이상” 을 “자녀가 둘 이상”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특별휴가) ① (생 략) ② <신 설> ③ 여성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④ ~ ⑩ (생 략) ⑪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 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 5. (생 략) <신 설>	제23조(특별휴가) ① (현행과 같음) ② <u>여성공무원은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하여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 휴가를 받을 수 있다.</u> ③ <u>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무급)를 받을 수 있다.</u> ④ ~ ⑩ (현행과 같음) ⑪ <u>소속공무원 또는 소속공무원의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u> 1.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u>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u> <삭 제> 2. ~ 4. (현행 제3호부터 제5까지와 같음) 5. <u>남성공무원의 경우 3일</u>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 7

-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사산의 경험에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 ④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2.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남성공무원의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신청하면 제4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 3일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 ⑥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여성공무원은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 ⑦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 ⑧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⑨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2. 어린이집등에 재학 중이거나 「민법」상 미성년자인 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⑩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해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⑪ 여성공무원은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받을 수 있다.

